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자산운용지침 개정 업무처리 미흡
소 관 부 서 ◆◆◆◆◆
관 련 자 ◆◆◆◆◆ ☆☆☆
조 치 부 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주체로서 자산운용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기준 등을 명시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 기금운용의 목표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산운용심의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예술위원회 내규인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규정 제8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에서도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자산운용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지침 제1조제2항을 통하여 자산운용지침은 1년 단위로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역의 역할을 하는 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을 정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연간 자산운용지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연초에 확정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등 일관된 원칙 수립을 바탕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술위원회 자산운용지침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자산운용지침의 개정과 보고 등 지침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예술위원회 규정집을 살펴본 결과 감사일 현재(2019. 9. 27) 수록되어 있는 자산운용지침은 2018. 1. 15. 일자로 개정된 2017년도 자산운용지침으로 지침의 현행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자산운용지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자산운용지침 수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8년도 제1차 자산운용위원회(개최일시 2018. 3. 23) 회의에서 자산운용지침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간 자산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한 후 지침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개정된 지침을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해당 지침을 규정집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2019년도 자산운용지침의 경우에도 2019년도 제1차 자산운용위원회(개최일시 2019. 3. 15) 회의에서 연간 자산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감사일 현재(2019. 9. 27)까지 최종적인 지침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관련자의 주장 및 판단]

관련자는 위와 같이 자산운용지침 개정이 지연되고, 개정된 지침이 규정집에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적시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산운용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던 기존 직원이 퇴사한 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본연의 자산운용 업무 외에 출납 등 기타 업무를 혼자 처리하여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 업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감안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2019년 기간 동안의 자산운용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내역을 확인해본 바 관련자의 자산운용 업무를 보조하였던 직원이 퇴사한 후 1년여의 기간 동안 해당 업무에 신규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고, 지난 2019년 3월 배치된 인력 또한 업무처리 역량이 미숙한 신규입사자를 배치하는 등 사무처와 담당부서의 인력충원 및 업무분장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실에 대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지 않으나 향후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자 및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자산운용지침 관리에 더욱 유의하도록 통보 처분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자산운용지침 개정 시 절차를 준수하고, 업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산운용지침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시 정, 통 보

제 목 자산운용조직 운영 개선 필요
소 관 부 서 ◆◆◆◆◆, ○○○○○○
관 련 자 ◆◆◆◆◆ ☆☆☆
조 치 부 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내 용

1. 업무개요

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운용지침 제4조(자산운용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제8조(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에 근거하여 자산운용 전략수립, 투자 사전 검토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운용지침 제5조(리스크관리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제8조(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에 따라 자산운용 업무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리스크관리기준의 관리, 자산운용 성과평가 검토 등 자산운용 업무의 감독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따라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 전담부서를 두고,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 업무 또한 전담부

서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운용지침 제4조 및 제5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제8조를 통해 기금 자산운용 업무의 의사결정 체계,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자산운용조직의 구성과 역할 등 자산운용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 지침에 따라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인 자산운용부서를 지정하여 자산운용계획 및 운용전략 수립, 목표수익률 설정, 금융기관 선정 및 평가,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였으며, 자산운용 시 발생가능한 리스크 관리 등 감독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시장리스크 관련 허용위험한도 설정 및 모니터링, 자산운용의 성과평가 검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리스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조직 내 기획업무 소관부서로 지정하여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 회의 소집 및 통지, 회의록 작성, 수당 지급 등 위원회 운영 시 지켜야 할 세부 방침을 담은 자산운용위원회 운영기준,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기준을 정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리스크관리조직 운영 개선 필요

1) 리스크관리체계 관련 지침 현행화 미흡

2015. 11. 13.에 단행된 예술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라 ◆◆◆◆◆가 기획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가 자산운용 관련 리스크관리업무,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는 리스크관리 주무부서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2019. 3. 4. 일자를 기준으로 추진된 예술위원회의 조직개편 결과 자산운용 업무가 기획담당부서인 ◆◆◆◆◆로 편입되어 ◆◆◆◆◆가 자산운용 주무부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업무의 독립적인 수행을 위해 2019. 3. 4. 일자로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리스크관리업무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로 재분장하였으나, 2019년도 제1차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모두 ◆◆◆◆◆ 주관으로 개최¹⁾되었다.

그 후 2019년도 제2차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와 ○○○○○에서 별도로 운영하였으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운용지침과 자산운용지침 상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주무부서가 아직 ◆◆◆◆◆로 명시되어 있는 등 관련 지침의 현행화가 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2) 실질적인 자산운용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체계 강화 필요

리스크관리업무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은 자산운용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견제라는 목적에 따라 자산운용 주무부서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자산운용지침을 통해서도 리스크관리업무는 자산운용 업무와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크관리업무 수행내역과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리스크관리체계 운영 시 독립성 확보에 미흡한 사실이 있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리스크관리업무 주무부서에서 회의 개최를 추진하였으나 회의에 참여하는 인력은 리스크관리업무 주무부서 담당자나 직원이 아닌 자산운용 주무부서의 담당자와 직원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 주관으로 제1차 자산운용위원회는 2019. 3. 14(목) 개최,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9. 3. 15(금) 개최

[표 3] 2018~2019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실태

연도	차수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부서	자산운용 업무 담당부서	실제 회의 참여자
2018년	1차	◆◆◆◆◆	○○○○○○○	○ 문화나눔본부 ★★★ 본부장, ○○○○○ ○ ☞☞☞ 센터장, ☆☆☆ 차장, ◆◆ ◆ 사원
	2차	◆◆◆◆◆	○○○○○○○	○ 문화나눔본부 ★★★ 본부장, ○○○○○ ○ ☞☞☞ 센터장, ☆☆☆ 차장, ◆◆ ◆ 사원
	3차	◆◆◆◆◆	○○○○○○○	○ 문화나눔본부 ★★★ 본부장, ○○○○○ ○ ☞☞☞ 센터장, ☆☆☆ 차장, ◆◆ ◆ 사원
	4차	◆◆◆◆◆	○○○○○○○	○ 문화나눔본부 ★★★ 본부장, ○○○○○ ○ ☆☆☆ 차장
2019년	1차	◆◆◆◆◆	◆◆◆◆◆	○ ◆◆◆◆◆ ★★★ 부장, ☆☆☆ 차장, ▣▣▣ 사원
	2차	○○○○○○○	◆◆◆◆◆	○ ◆◆◆◆◆ ☆☆☆ 차장, ▣▣▣ 사원

또한 현재 내부 전문인력의 부재를 보완하고, 리스크관리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펀드평가(주)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위험관리 지표 (VaR, Shortfall Risk 등) 분석 및 정기보고, 리스크 분석 결과 피드백 등 리스크 측정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계약을 체결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결과물을 보고 받거나 관리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예술위원회의 담당자 또한 자산운용 담당자인 ☆☆☆ 차장 1인에 불과하며, 관련 자료 등이 기관 내부분서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기금 자산운용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리스크관리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부서 또는 전문인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예술위원회에는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자산운용 업무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리스크관리업무 까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산운용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는 리스크관리업무 또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위험관리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등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각 위원회 운영기준은 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감사일(2019. 9. 27.) 현재까지 개최된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 4]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회의록 작성이 누락되어 있는 등 회의 운영에 대한 기록 관리가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다.

[표 4] 2018~2019년도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작성 실태

연도	구분	차수	회의안건	회의록 작성여부
2018년	자산운용 위원회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연간 성과평가 결과보고 ○ 2018년도 연간 자산운용계획안 심의 ○ 부동산 PF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작성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1분기 성과평가 결과보고 ○ 2018년도 금융기관 선정(안) 심의 ○ 2018년도 자산운용계획 일부 변경(안) 심의 ○ 부동산 PF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작성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 ○ 부동산PF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미작성
		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3분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 ○ 부동산PF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미작성
	리스크 관리 위원회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연간 성과평가 결과 보고 ○ 2018년도 연간 허용위험한도 심의 ○ 부동산PF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작성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1분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 ○ 2018년도 금융기관 선정(안) 보고 ○ 2018년도 자산운용계획 일부 변경(안) 보고 ○ 부동산PF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작성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자산운용계획 변경 결과 보고 ○ 2018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 ○ 부동산PF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미작성

		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3분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 ○ 부동산PF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미작성
2019년	자산운용 위원회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연간 성과평가 결과 보고 ○ 2019년도 연간 자산운용계획(안) 심의 ○ 부동산PF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미작성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보고 ○ 부동산PF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일본 부동산(비즈니스 호텔) 펀드 투자의 건 	작성
	리스크 관리 위원회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연간 성과평가 결과 보고 ○ 2019년도 연간 허용위험한도 심의 ○ 부동산PF 후속조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미작성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보고 ○ 부동산PF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일본 부동산(비즈니스 호텔)펀드 투자의 건 	작성

[관련자의 주장 및 판단]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누락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 회의를 주관 하였던 관련자는 회의록 작성이 누락된 건들에 대하여 업무처리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업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담당 인력의 부족과 인력 충원이 지연되었던 당시의 정황을 감안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회의록 내용을 녹취한 음성파일 또한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4월 기존 인력의 퇴사 이후 사무처와 담당부서의 인력충원 및 업무분장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인력 공백으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판단되는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최된 회의의 회의록이 누락된 점,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녹취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담당자의 주장은 일부 인정된다. 또한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부서에서 주관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관련자 1인 혼자 모든 회의를 주관하였던 만큼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과실에 대해 별도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그동안 누락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관계부서 의견]

◆◆◆◆◆는 리스크관리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하여 리스크관리업무에 대한 부서 간 업무 분장이 반영되도록” 하고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충원이나 조직의 신설, 부서 간 역할 분담 등의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의 누락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② 자산운용조직이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조직과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권 고

제 목	여유자금 인출 및 예탁 추진 시 사전 승인 절차 마련
관 계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1. 업무개요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및 제5조(파생상품)에 명시된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입하고 있으며, 투자 금융상품의 선정은 내부인력 3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상품선정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상품선정협의회에 따라 선정된 금융상품은 기금 수익금관리계좌를 통해 인출된 자금이나 기존 투자 금융상품의 회수·상환 등을 통해 마련된 여유자금을 신규로 선정한 금융상품 운용 금융기관에 재예탁하는 절차를 통해 매입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예술위원회에서 적립금을 인출하고 재예탁하는 절차를 살펴본 결과 여유자금의 인출과 신규 금융상품에 재예탁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실제 자금을 인출하고 이체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9년도 1월부터 감사일 현재(2019. 9. 27.)까지 금융상품 투자를 위해 처리된 기금 적립금 인출 및 재예탁 내역은 총 26건으로 담당자가 해당 추진내역의 보고 공문을 기안한 일자와 실제 여유자금 인출되고 이체가 완료된 일자를 비교 확인한 결과 26건 모두 자금이 이체된 사후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처리된 적립금 인출 및 재예탁 문서를 살펴보면 문서 내 상품선정협의회 결과를 명시하여 자금 이체의 추진근거로 삼고 있으며, 담당자 또한 자금 이체 추진을 위한 사전 보고는 상품선정협의회 결과보고를 통해 같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품선정협의회 결과보고를 통해서는 신규 선정 금융상품과 예치 금액 규모 등의 명세는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인출되는지 또는 기존의 어떤 금융상품을 회수하거나 상환하는지에 대한 내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품선정협의회 결과보고와는 별도로 적립금의 인출과 재예탁과 관련된 상세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금 이체 추진에 대한 사전 보고가 필요하다.

단, 보고가 사후에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적립금의 인출과 재예탁 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은 보고되고 있으므로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사전 예방적인 내부통제기능 강화 차원에서 향후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적립금 인출 및 재예탁 추진 시 인출 자금의 내역과 예탁처, 금액 등에 대한 상세내역을 사전에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보고를 허용하게끔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는 지적사항에 따라 “향후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적립금 인출 및 재예탁 업무수행 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친 후 기금운용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 여유자금(적립금)의 인출 및 예탁 추진 시 반드시 결재권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자산운용 담당 전문인력 충원 방안 마련
 관 계 부 서 ◆◆◆◆◆
 조 치 부 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내 용

1. 운영실태

예술위원회의 기금(자산)운용 업무는 적립금(여유자금) 운용 기본계획 수립과 관리 및 운용, 운용실적 평가 지표 관리 및 보고서 작성,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기금 자산운용 관리 담당부서는 ◆◆◆◆◆로서 세부 업무분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부서 내 2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5] 기금운용 담당자 업무분장

담당자		담당업무	담당기간	비고
직급	성명			
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적립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정) ○ 적립금 관리 및 운용(정)부실자산 관리 및 투자 자금 회수 ○ 기금운용실적평가 지표 관리 및 보고서 작성 ○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협력 ○ 적립금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모니터링 ○ 기금 운용 관련 대내·외 업무 처리 	2015.5~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에서 동일 업무 수행
주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적립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부) ○ 적립금 관리 및 운용(부) ○ 위원회 전체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 운영 총괄 지원(부) ○ 전사 업무매뉴얼 관리 ○ 부서 청렴·윤리·인권경영 이행 관리 ○ 부서 고객만족도(PCSI) 관리 ○ 부서 기록물관리 ○ 부서 서무 	2019.3~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3월 신규 입사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현재 예술위원회의 기금 자산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현황을 살펴본 결과 업무 대비 담당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기금 자산운용 업무는 자산운용지침 제4항에 따라 전담인력 2인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게끔 하고 있다. 상기 업무분장에 따르면 자산운용 업무 담당자는 2명이나 그 중 ■■■ 주임 1명은 적립금 관리 업무 외에 위원회 전체회의 운영 지원, 소위원회 운영 총괄 지원, 부서 고객만족도(PCSI), 기록물관리, 부서 서무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기금 자산운용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직원은 2019년 3월 신규 입사한 인력으로서 자산운용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문역량을 갖춘 자산운용 전담인력은 실질적으로 1명에 불과하다.

2018년도의 경우에는 [표 6]과 같이 적립금 관리 및 운용업무 보조를 담당한 인력이 2018년 4월 퇴사하였음에도 2019년 3월까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기존 인력인 ☆☆☆ 차장 1명이 출금 전표작성 처리 등 보조 업무를 포함한 자산운용 업무 전부를 수행하였다.

[표 6] 기금운용 전담인력 현황(2018~2019년 현재)

담당업무	담당자		담당기간	근무부서	비고
	직급	성명			
적립금 관리 및 운용(정)	차장	☆☆☆	2019.3~현재	◆◆◆◆◆	
	차장	☆☆☆	2015.5~2019.3	○○○○○	
적립금 관리 및 운용(부)	주임	■■■	2019.3~현재	◆◆◆◆◆	2019년 3월 입사
	-	-	2018.4~2019.3	-	담당자 없음
	사원	◆◆◆	2016.4~2018.4	○○○○○	2018년 4월 퇴사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등 리스크관리업무도 실질적으로 자산운용 업무 담당자

1인이 담당하고 있어 자산운용 업무의 감독과 견제 기능의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전문인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8년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충당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과 복권기금과 체육기금 전입금 증액 등으로 인하여 기금 적립금의 규모가 순증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위험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인력 추가 채용 또는 기존 인력의 전문성 배양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 자산운용 담당 전문인력 충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계부서 의견]

◆◆◆◆◆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의 증가 추세에 맞춰 기금운용 전문인력 충원을 인재성장부와 협의하여 요청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 자산운용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위험관리 체계 개선을 위하여 자산운용 담당 전문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